

#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

## 국가개요

1. 국명 : 북마케도니아(Republic of North Macedonia)
2. 수도 : 스코피예(Skopje, 48만명)
3. 인구·면적 : 208만 명(2021), 25,713km<sup>2</sup>(한반도의 약 1/8)
4. 공용어 : 마케도니아어, 알바니아어
5. 1인당 GDP : 6,093불(2019년)
6. 독립일 : 1991. 9. 8.(구 유고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## 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North Macedonia

## 2. 연혁

- 1963. 마케도니아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
- 1964. 2. 15. 헌법재판소 설립
- 1991. 9. 8. 구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
- 1991. 11. 17. 신헌법 제정
- 1992. 10. 7. 헌법재판소법 제정
- 2017. 5. 31. 신정부 출범
- 2019. 1. 국명합의에 대한 헌법 개정 완료
- 2019. 2. '북마케도니아 공화국' 으로 국명 공식 변경

## 3. 구성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  
(헌법 제109조 제1항)

- 재판관 6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나머지 3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, 그 과반수에는 소수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함(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1)
-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(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)
-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재판관 2/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임기는 3년으로 중임 불가(헌법 제109조 제3항)
- 재판관은 저명한 법조계 인사 중에서 선출(헌법 제109조 제4항)

#### 4. 권한(헌법 제110조 등)

- 위헌법령심판
  - 법률의 위헌여부심판
  - 명령의 위헌·위법여부심판
-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
- 권한쟁의심판
  - 입법부·행정부·사법부 간
  -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
- 대통령 탄핵심판
- 정당, 사회단체의 당헌·강령의 위헌여부심판
- 기타 권한
  - 대통령 권한정지 및 면책특권 박탈에 대한 심판
  -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과 직무수행불능 확인심판

#### 5. 심리 및 결정

- 위헌법령심판의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사후적 규범 통제만이 가능(헌법재판소법 제47조)
- 위헌법령심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직권으로도 심리 가능(헌법재판소법 제11조, 제12조)

---

1) 북마케도니아 헌법은 수정조항들(amendments)을 통해 기존의 헌법규정을 교체한 부분들이 있는데 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은 기존의 헌법 제109조 제2항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었다.

- 전체회의(Meeting)는 재판관 5명 이상이 참석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, 참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림. 다만, 헌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2/3 이상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참석할 때 개최함(헌법재판소법 제6조)
-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예비회의(Preparatory Meeting)를 개최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29조)
-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거나,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한 경우 및 결정에 필요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함
- 헌법소원심판은 개별 법령이나 행위에 의해서 헌법상의 양심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, 정치적 집회·결사의 자유, 평등권(성, 인종, 종교, 국가, 민족·사회·정치적 지위 등)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,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51조)
- 헌법소원심판 심리를 위해 공개변론(public hearing)을 개최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33조).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의하여 침해 행위는 금지되고 개별 법령은 무효화 됨(헌법재판소법 제79조, 제80조)
- 심판의 대상인 개별 법령 및 행위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57조)
-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재적의원 2/3 이상이 발의하여, 재판관 전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(헌법 제87조 제2항)
- 대통령 권한정지 심판은 대통령의 사망, 사임, 직무수행 불능, 헌법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의 사유를 확정하는 것이며,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(헌법 제82조)
-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박탈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조사를 위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(헌법재판소법 제61조)

## 6. 연락처

- 주소 :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North Macedonia  
 kej “Dimitar Vlahov” no.19  
 1000, Skopje

- 전화번호 : +389 2 3165 153
- 팩스번호 : +389 2 3119 355
- 홈페이지 : <http://ustavensud.mk/>

※ 출처 : 마케도니아 헌법  
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법

(2021. 2. 작성)